

2023년도 제2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1.(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전차(제2023-26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복제 ·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대행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00건(안건번호 제2023-215254호~제2023-21700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15254호~215268호(순번 1번~15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15269호(순번 16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 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5270호~215274호(순번 17번~21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5275호~215277호(순번 22번~24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5278호~215280호(순번 25번~27번)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5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0건(안건번호 제2023-23~42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 20건을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72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6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50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0개 게시물임.

(순번 6번 및 1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중이진 않지만,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1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의 자막파일(smi)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이며, 총 1건임.
(순번 1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 등)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

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영상저작물의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파일을 제작 및 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대본(어문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포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건과 같이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판단하고 있음.

정리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다수의 자막파일을 동일

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어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본 사안의 저작물은 방영일이 언제인지?

- 김민영 주임: 순번 16번 저작물은 방영기간이 ㉠㉠㉠㉠㉠㉠부터로 최신저작물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 A 위원: smi 파일 등으로 배포되는 자막파일은 영상물의 불법복제물과 함께 이용해 음성, 자막을 싱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임.

- B 위원: 동의함. 또한 해당 블로그를 살펴보면 몇 십건에 해당하는 자막파일 게시글을 보았을 때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단됨.

- 김민영 주임: 다만,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1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2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6개 게시물임.
 (순번 1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17번~21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일본 만화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링크를 통해 각 불법게시물로 이동하여 만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데, 불법게시물은 모두 해외 블로그로 확인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됨.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

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중이 불법복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한편, 링크게시물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불법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하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본 원칙이나, 불법게시물이 ‘구글 블로그’와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게시물과 별도로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정리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7번 내지 21번 링크 게시물의 경우 시정권고를 통해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기에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7번~2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10개 게시물임.
 (순번 2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22번~24번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의 주소를 각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인 것은 아니나,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의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고 있는바,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됨.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또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는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는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속차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대체사이트이고,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거나 향후 갱신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정 시점의 URL에 대한 차단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성을 유지한다고 할 것임.

정리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22번~24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중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링크 게시를 통해 불법복제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임. 이에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경숙, 김춘식: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2번~2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번~27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방송물을 제공중인 사안이며, 총 3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순번 25번~27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5번~2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

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8번~17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450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음악, 만화, 출판, 게임, SW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순번 28번~175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8번~175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5254호~215268호(순번 1번~15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5269호(순번 16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5270호~215274호(순번 17번~2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5275호~215277호(순번 22번~2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5278호~215280호(순번 25번~27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5281호~217006호(순번 28번~175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5호 20개 안건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15.

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